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5. 2.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3년 4월 18일

나. 발 의 자 : 김주범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 2013년 4월 25일

라. 상정일자 : 제174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13년 4월 29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김주범 의원)

가. 제안이유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효행장려금을 지원하여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20만원 이내의 효행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태선)

- 본 개정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효행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노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가족구조의 변화와

부양의식 약화 등으로 노인을 부양하고 효를 중요시하는 미풍양속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임.

우리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도 2010년 42,083명에서 2013년 3월 현재 46,117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독거노인도 2010년에는 8,955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10,027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대상 노인 6,745명 중 전체 노인의 13.8%인 931명이 노인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 되었음.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행문화와 경로효친 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2008년 8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2010년 3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으로 권고 한 바 있음.

우리구도 2012년 5월 17일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급격한 고령화에 대한 제도적 준비는 미흡한 실정으로 효행을 장려하고 효문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 따라서 본 개정안이 실제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에게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효 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부양자에게 지원하는 20만원 기준은 타 자치구 사례와 유사한 수준임. 2013년 3월 현재 우리 구 100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218명이며 2012년도 100세 이상 노인에게 위문금으로 지원된 예산은 28명 2,800천원이었고, 2013년도 예산은 35명 3,500천원이 편성되어 주민등록상 인구와 실제 지급대상자와의 차이가 있음.

효행장려금 예산은 연 7,000천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지원하고 있는 100세 이상 노인 위문사업과 본 조례로 시행하고자 하려는 효행장려금 지원이 같은 세대에 중복 지원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노인 위문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주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
----------	-----

발의연월일 : 2013년 4월 일
발 의 자 : 김주범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효행장려금을 지원하여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20만원 이내의 효행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개정안 : “별 첨”

4. 참고내용

- 가. 관계법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예산조치 필요
- 다. 합 의 : 노인복지과, 총무과, 기획예산과
- 라. 입법예고(2013. 4. 8 ~ 4. 15)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효행장려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만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이하 “부양 대상자”라 한다)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20만원 이내의 효행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과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장려금 지원에 대한 적합여부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2.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제 거주 여부

④ 구청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장려금을 지원하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내역을 관리·비치하여야 한다.

⑤ 장려금은 매년 10월에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부양대상자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지원사유가 소멸된 경우
2. 부양대상자가 장려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⑥ 구청장은 제5항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원된 장려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효행장려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지급 금융계좌	예금주				계좌번호(은행명)	
부 양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p>「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효행장려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p> <p>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p>						
<p>※ 구비서류 : 금융계좌(통장)사본 1부</p>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p>○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p> <p>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p>						
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p>※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p>						
구 분	신청인			부양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제거주 여부 :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기관	동장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7조(효행장려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만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이하 “부양대상자”라 한다)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20만원 이내의 효행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u></p> <p><u>② 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③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과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장려금 지원에 대한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u> <u>2.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제 거주 여부</u> <p><u>④ 구청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장려금을 지원하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지원 대상자에 대한 내역을 관리·비치하여야 한다.</u></p> <p><u>⑤ 장려금은 매년 10월에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부양대상자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지원사유가 소멸된 경우</u> <u>2. 부양대상자가 장려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u>

	<p>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p> <p>⑥ 구청장은 제5항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원된 장려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p>																																																																											
제7조(생략)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생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생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신설>	<p>[별지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효행장려금 지원신청서</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width: 15%;">신청인</td> <td style="width: 15%;">성명</td> <td colspan="2">주민등록번호</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2"></td> </tr> <tr> <td>연락처</td> <td colspan="2"></td> </tr> <tr> <td rowspan="2">지급 금융계좌</td> <td>예금주</td> <td>계좌번호 (은행명)</td> <td></td> </tr> <tr> <td rowspan="3">부양 대상자</td> <td>성명</td> <td>주민등록번호</td> </tr> <tr> <td colspan="2">주소</td> <td></td> </tr> <tr> <td colspan="2">신청인과의 관계</td> <td></td> </tr> <tr> <td colspan="4"> <p>「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효행장려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p> </td> </tr> <tr> <td colspan="4">※ 구비서류 : 금융계좌(통장)사본 1부</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td> </tr> <tr> <td colspan="4"> <p>○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p> <p>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p> </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td> </tr> <tr> <td style="width: 15%;">구분</td> <td style="width: 15%;">신청인</td> <td colspan="2">부양대상자</td> </tr> <tr> <td>성명</td> <td></td> <td colspan="2"></td> </tr> <tr> <td>주민등록번호</td> <td></td> <td colspan="2"></td> </tr> <tr> <td>확인사항</td> <td colspan="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제거주 여부 : </td> </tr> <tr> <td>확인자</td> <td>소속</td> <td>직급</td> <td>성명 (서명 또는 인)</td> </tr> <tr> <td>확인기관</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동장 (직인)</td> </tr> </tbody> </table>	효행장려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지급 금융계좌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		부양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p>「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효행장려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p>				※ 구비서류 : 금융계좌(통장)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p>○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p> <p>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p>				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구분	신청인	부양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제거주 여부 :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기관	동장 (직인)		
효행장려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지급 금융계좌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																																																																										
	부양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p>「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효행장려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p>																																																																												
※ 구비서류 : 금융계좌(통장)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p>○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p> <p>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p>																																																																												
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구분	신청인	부양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제거주 여부 :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기관	동장 (직인)																																																																											